

CEPIK-2023-A-01

# 부실벌점, 이중처벌 등 건설기술인 제재 합리화 방안

2022. 2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연구진

---

이연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윤강철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학박사
윤종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부실벌점, 이중처벌 등 건설기술인 제재 합리화 방안

# 발간사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은 2017년 설립된 이래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설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건설기술인의 목소리가 구현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여러 법에 따라 중복해서 처벌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건설산업 내 건설기술인의 제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인의 부실벌점과 이중처벌 등 제재의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건설기술인들이 직면한 실질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인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해결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인터뷰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재)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  
원장 김문겸



##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 과정에서 각종 법령이나 발주기관의 예규, 지침과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행정적,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며, 건설산업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하, '건설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수십 개에 달함.
- 위 건설 관련 법령의 경우, 각 법의 도입목적에 따른 '의무'와 '의무 이행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개별 법령의 처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21.06)', '광주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22.01)' 등 대형 사고의 잇따른 발발은 건설산업의 참여자인 건설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책임·의무 및 처벌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별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위 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건설기술인으로서 중복적으로 처벌받거나,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과거 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내 처벌 기준에 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어왔으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건설기술인의 직접적인 처벌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가 아닌, 건설산업 전체 또는 사업자(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관점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재 관련 법령에 대해 파악하고, 각 제재의 처분 통계 및 건설산업 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점의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2) 연구결과

### 1)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현황 및 문제점

- 건설 관련 법령들은 법령마다 규제의 목적 및 대상이 구분되기에 이중 처벌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였음.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에 따른 규제의 경우, 규제 대상이 건설기술인이 아닌 주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위반행위(입찰담합, 뇌물공여)에 대해 법령 간 중복해서 처벌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처벌 기준의 개선 명분이 떨어지며, 처벌 대상 또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업자/사업주(기업)가 주로 해당함.
-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벌(벌칙, 과태료)과 행정제재 처분(업무정지, 벌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행정벌의 경우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무 위반이나 업무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하는 규정임. 그러나 위반행위의 특성 및 처벌 기준이 명확하고 타법과의 중복 가능성이 작아 개선의 여지가 적음.
  - 행정제재 처분 중 '업무정지'의 경우 주로 자격 불법 대여, 경력 허위신고 등 건설기술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개인적 일탈 행위에 따른 처벌임. 처분 통계 분석 결과 처벌 빈도는 매우 높아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지만, 위반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처벌 기준에 대한 개선은 어려움.
  - 반면 제재 처분 중 '벌점'의 경우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미한 부실 발생의 책임에 따른 처분으로 건설기술인에게 매년 1,400~1,900건 처분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 큼. 또한,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기에 타법과의 중복성 문제나 처벌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처벌 기준의 합리성과 처벌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벌점제도'가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개선이 필요한 제재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벌점' 처분을 대상으로 타법과의 중복 여부, 처벌 기준의 합리성 및 명확성 등 개선을 수행하고자 함.

## 2)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개선방안

- 벌점제도 개선방안은 벌점제도 개요, 벌점 부과 현황, 관련 불이익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유사 제도의 사례분석을 취합하여 도출하였으며, 개선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벌점 영향력의 실효성 확보, ②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③벌점 측정기준 합리화, ④벌점 경감기준 확대로 구분하였음.

① 벌점 적용의 실효성 확보	1.1.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정지’ 기준과의 중복성 해소
	1.2. 건설기술진흥법 ‘벌칙’ 기준과의 중복성 해소
	1.3.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의 중복성 해소
②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	2.1. ‘소홀히’ 표현의 구체화
	2.2. ‘설치상태 불량’ 표현의 구체화
	2.3. ‘주요 자재’ 등 용어의 구체화
	2.4. ‘미흡한’ 표현의 구체화
	2.5. ‘필요한 조치’ 표현의 구체화
③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	3.1.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보완 기회 부여
	3.2. 건설기술인 확보에 대한 벌점 기준 삭제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예비준공’ 업무 관련 벌점 기준 삭제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관련 벌점 기준 개선
④ 벌점 경감기준 확대	4.1. 교육 이수를 통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4.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 개선방안〉

- 이후 개선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선별하였으며, 각 개선안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제안하였음.

## (3) 기대효과 및 한계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 파악하고, 각 제재의 처분 빈도 및 건설산업 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여 불합리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22년 8월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측에 개선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22년 10월 입법 예고를 통해 개선안 중 일부가 채택되었음.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에서는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아니더라도, 건설 관련 법률 등에서는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을 등록하는 데 특정 기술 등급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등의 배치 시 일정 등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확보하도록 규정
  - 업 등록요건 :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등록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 기술인력(건설기술인)을 요함
  -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 건설기술인의 범위, 안전점검 수행의 자격요건,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업무의 책임기준자의 자격 요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술분야의 역량(기술등급, 자격, 학력) 등을 요구
  -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등 '사업자'의 입낙찰 및 역량 평가를 위한 요소로 보유/참여 기술인력(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을 활용
- 위 같은 경우 건설기술인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 이행 대상자인 사업주가 각종 규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에는 건설산업 내 건설기술인과 연관된 전반적인 '규제'를 파악하여 건설기술인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목 차 -

<b>제1장 연구개요</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4
3. 연구의 방법 .....	5
<b>제2장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및 개선방향</b> .....	<b>7</b>
1. 건설 관련 제재의 종류 및 특징 .....	9
1.1. 건설 관련 제재의 유형 .....	9
1.2. 건설 관련 제재의 특징 .....	14
2.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	22
2.1.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의 종류 .....	22
2.2.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통계 .....	29
3. 소결 .....	36
<b>제3장 벌점제도 현황 및 문제점</b> .....	<b>41</b>
1. 벌점제도 개요 .....	43
2. 벌점제도의 운영 및 관리체계 .....	47
2.1. 벌점의 부과 .....	47
2.2. 벌점의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	48
2.3. 벌점의 부과기준 .....	50
2.4. 벌점의 통보 .....	51
3. 벌점의 영향 .....	53
4. 타법의 벌점제도 .....	55
4.1. 건설산업기본법 .....	55
4.2. 전력기술관리법 .....	56
4.3. 소방시설공사법 .....	57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8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59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60
5. 소결 .....	61
<b>제4장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제도 개선방안 .....</b>	<b>63</b>
1. 벌점제도 개선방안 도출 절차 .....	65
2. 벌점제도 개선방안 .....	67
2.1. 벌점 적용의 실효성 개선 .....	67
2.2.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 .....	73
2.3.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 .....	78
2.4. 벌점 경감기준 확대 .....	82
<b>제5장 결론 .....</b>	<b>87</b>
<b>참고문헌 .....</b>	<b>91</b>
<b>부록 1 건설 관련 처벌 법규 현황 .....</b>	<b>93</b>
<b>부록 2 법령별 벌점 측정 기준 .....</b>	<b>141</b>

## - 표 목차 -

〈표 2-1〉 법령 내 처벌의 유형 .....	9
〈표 2-2〉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형벌 .....	10
〈표 2-3〉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질서벌 .....	11
〈표 2-4〉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제재 처분 .....	13
〈표 2-5〉 법령별 벌점제도 종합비교 .....	14
〈표 2-6〉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현황 .....	15
〈표 2-7〉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현황 .....	17
〈표 2-8〉 건설관련 법령별 의무이행 사항 및 주체,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의 종류 .....	18
〈표 2-9〉 건설산업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의 종류(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	19
〈표 2-10〉 건설기술인 대상 처벌 현황(건설기술진흥법) .....	22
〈표 2-11〉 건설기술인의 벌칙 위반행위 및 처벌 .....	23
〈표 2-12〉 건설기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	25
〈표 2-13〉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 .....	27
〈표 2-14〉 연도별 건설기술인 처벌 현황 .....	30
〈표 2-15〉 건설기술인 처벌의 사유 .....	31
〈표 2-16〉 건설공사 벌점 부과 현황(‘20~‘21년) .....	33
〈표 2-17〉 건설공사 벌점의 부실 내용별 부과 건수(‘20~‘21년) .....	34
〈표 3-1〉 벌점제도 주요 개정 내용 및 연혁 .....	44
〈표 3-2〉 벌점제도 주요 변경내용(도입 당시-현행) .....	46
〈표 3-3〉 건설공사 벌점 개요 및 측정방식 .....	47
〈표 3-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한 .....	48
〈표 3-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산정 예시 .....	49
〈표 3-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적용의 예외 .....	50
〈표 3-7〉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	52
〈표 3-8〉 벌점제도 불이익 관련 법령 .....	53
〈표 3-9〉 벌점제도와 연계된 건설기술인 관련 불이익 .....	54
〈표 3-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56
〈표 3-1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57

〈표 3-12〉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57
〈표 3-13〉 산림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59
〈표 3-14〉 하도급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59
〈표 3-15〉 상생협력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	60
〈표 3-16〉 법령별 벌점제도 종합비교 .....	62
〈표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	68
〈표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	68
〈표 4-3〉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	69
〈표 4-4〉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벌 .....	69
〈표 4-5〉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70
〈표 4-6〉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및 벌점에 대한 불이익 · 71	
〈표 4-7〉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시 벌점에 대한 불이익 .....	71
〈표 4-8〉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1) 72	
〈표 4-9〉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내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개정(안) .....	72
〈표 4-10〉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1) .....	74
〈표 4-11〉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2) .....	74
〈표 4-12〉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3) .....	75
〈표 4-13〉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4) .....	75
〈표 4-14〉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2) 76	
〈표 4-15〉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1) .....	78
〈표 4-16〉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2) .....	79
〈표 4-17〉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3) .....	80
〈표 4-18〉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4) .....	80
〈표 4-19〉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3) 81	
〈표 4-20〉 타법에서 규정하는 벌점제도의 경감기준 .....	82
〈표 4-21〉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경감기준(벌점제도 도입당시, 1995.10.12.) .....	83
〈표 4-22〉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의 경감기준(현재) .....	84
〈표 4-23〉 타법의 벌점제도 경감 기준 .....	85
〈표 4-24〉 도로교통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86

##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의 수행범위 및 프로세스 .....	5
〈그림 2-1〉 건설기술인 처벌의 사유 .....	32
〈그림 2-2〉 연도별 건설기술인 벌점 처분대상 수 .....	36
〈그림 2-3〉 위법행위 특성에 따른 건설기술인 제재의 구분 .....	39
〈그림 3-1〉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	51
〈그림 3-2〉 벌점제도 관리 체계 .....	52
〈그림 4-1〉 벌점제도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	66
〈그림 4-2〉 벌점제도 개선방안 (1) .....	66
〈그림 4-3〉 벌점제도 개선방안 (2) .....	67
〈그림 5-1〉 법령별 건설기술인 관련 규제 현황 .....	90

# 제1장 연구개요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 과정에서 각종 법령이나 발주기관의 예규, 지침과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행정적,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행정제재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을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위 같은 규제는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21.6월)’, ‘광주 아파트현장 붕괴사고(‘22.1월)’ 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책임·의무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 현재 건설기술인의 위반행위 및 부실시공에 관해 여러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별 처벌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등 처벌 기준의 유연성이 떨어져 건설기술인이 처벌받을 경우, 처벌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건설기술인을 입찰, 업면허, 현장배치 등에 활용할 수 없음.
- 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 기준 중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인 제재가 처벌 위주가 아닌 건설기술인이 능동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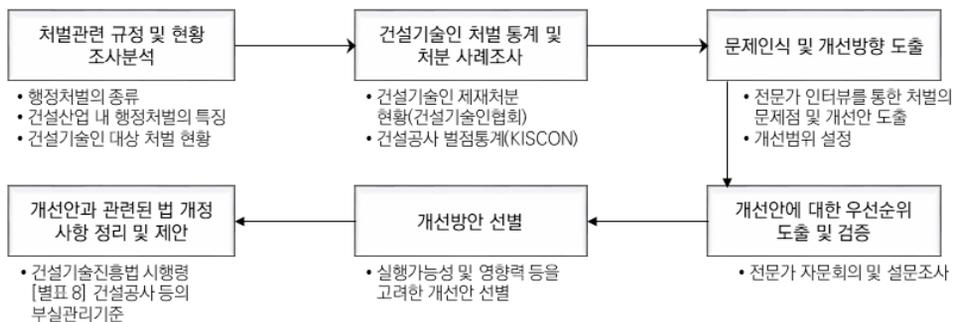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 건설 관련 법률 등에서는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을 등록할 때 특정 기술 등급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의무이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현장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동법 제9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재’란 위와 같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규제를 의무이행 대상자가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제한 조치로서, 제재의 종류에는 행정형벌(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등록말소, 입찰참가제한 등)등이 있음.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를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 대상자가 건설기술인이면서, 의무 위반 시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제”로 정의하였으며,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본 연구의 과업 범위로 설정하였음.

### 3.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의 개선을 위해 먼저 건설 관련 법령 중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와 처벌 종류 등을 검토<sup>1)</sup>하여, 법령 중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법령을 선별하고자 하였음<sup>2)</sup>.
- 건설관련 법령 중 의무이행 사항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기준이 명시된 법령을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의 주요 의무이행사항, 의무이행 대상 주체, 처벌의 종류, 처벌 대상 등을 분석함.
- 이후, 건설기술인을 대상 제재 현황분석을 통해 건설기술인에게 중복으로 처벌되거나 불합리하게 처벌되는 사항 등 문제 인식을 도출하고자 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선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을 정리 및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사항들이 원활히 입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그림 1-1〉 연구의 수행범위 및 프로세스

- 1) 건설 관련 법령별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종류 및 수위를 검토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음
- 2) 건설산업 내 법령별 규제의 목적, 사유, 대상 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별 의무이행 대상이 건설기술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재 사항을 정리하였음.



# 제2장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및 개선방향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 제2장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및 개선방향

### 1. 건설 관련 제재의 종류 및 특징

- 국내 건설 생산체계는 다양한 업역과 분야가 어우러진 구조로, 건설산업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 수십여 개에 달함.
- 이에 따라 건설산업 내 규제 또한 다양한 건설관련 법령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각 건설관련 법령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사항’과 ‘의무이행 대상’을 정의하고 의무를 위반 시 이를 제재하고 있음.

#### 1.1. 건설 관련 제재의 유형

- 건설 관련 제재는 건설 관련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신체적·재산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법질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관련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제재는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설 관련 법령별 행정벌과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참고

〈표 2-1〉 법령 내 처벌의 유형

구분		의미	처벌의 종류
행정벌	행정형벌	위반행위가 직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	•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행정질서벌	위반행위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지는 않는 단순한 의무 태만에 부과되는 제재	• 과태료
행정제재 처분		행정청이 일정 행위에 대해 법규와 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내리는 처분	• 업무(영업)정지, 벌점, 입찰 참가제한 등

### 1) 행정형벌

- ‘행정형벌’이란 위반행위가 직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로서 형사벌 중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등의 4개의 형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 건설 관련 행정형벌 중 최고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에 따른 ‘무기징역’임.
- 건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중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요 형벌은 <표 2-2>와 같으며, 형벌이 높은 위반행위들은 대부분 인명피해와 관련되어 있음. 이외 ‘기술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거짓신고, 불법 대여, 보안 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형벌

법령	위반행위	형벌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b>법 제93조</b>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아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 다리,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b>법 제85조</b>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b>법 제167조</b>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 <b>법 제106조</b> )	10년 이하의 징역
주택법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 <b>법 제98조</b> )	10년 이상의 징역
하도급법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 ( <b>법 제29조</b>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위반행위	형벌 내용
건축사법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b>법 제39조</b>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엔지니어링 산업법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b>법 제46조</b>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 <b>법 제43조</b>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이란 위반행위가 직접적인 행정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단순한 의무 태만 행위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로 ‘과태료’가 있음.
-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경우 최소 30만 원 이하(건축법 제82조)에서부터 최대 5,000만 원(하도급법)으로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건설기술인 등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수준으로(〈표 2-3〉 참고), 건설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 대비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기술인으로서 의무 사항 및 안전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신고, 불법대여, 명의도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3〉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질서벌

법령	위반행위	형벌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교육,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b>법 제92조</b>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b>법 제92조</b>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b>법 제100조</b>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b>법 제175조</b>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b>법 제175조</b> )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b>법 제175조</b> )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위반행위	형벌 내용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b>(법 제175조)</b>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b>(법 제175조)</b>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엔지니어링 산업법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b>(법 제48조제1항)</b>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b>(법 제48조제2항)</b>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b>(법 제48조제3항)</b>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사법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b>(법 제41조제1항)</b>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b>(법 제41조제1항)</b>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b>(법 제41조제2항)</b>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b>(법 제41조제2항)</b>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행정제재 처분

- ‘행정제재 처분’이란 행정청이 일정 행위에 대해 법규와 행정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내리는 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벌점 등의 처분이 있음.
- 행정제재 처분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처분 대상인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여 실질적 처분의 효력은 형벌에 버금가는 효력이 발생함.

#### 가. 업무정지

- <표 2-4>와 같이 ‘업무정지’의 경우 건설기술인, 건축사, 기술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처분으로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업무정지 또는 자격취소/등록취소를 가함.
- 위반행위의 종류를 살펴보면, 거짓신고, 불법대여, 업무태만, 비밀 누설 등 건설기술인, 건축사, 기술사로서 윤리나 품위를 떨어뜨렸을 때 처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4〉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행정제재 처분

법령	위반행위	형벌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미작성/거짓작성/내용누락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건축사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자격등록취소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등록취소
기술사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벌점

- <표 2-5>의 벌점 처분의 경우 부실시공 및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처분으로서,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

<표 2-5> 법령별 벌점제도 종합비교

구 분	주요 벌점 부과사유	벌점 유효기간	벌점 부과 대상	불이익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심제 감점, 역량지수 감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선분양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수급인 관리 부실	3년	업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
전력기술관리법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소방시설공사법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질서 저해행위	3년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3년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건설 관련 제재의 특징

- 건설 관련 법령은 의무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벌과 행정제재 처분을 일부 병과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입찰담합’, ‘뇌물공여’ 행위의 경우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벌 처벌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이나 PQ심사 감점 등 행정제재도 부과되고 있음.

1) 입찰담합

-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정벌과 행정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형법 제315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9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입찰 시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매출액 20/100 미만의 과징금을 부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간주하여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PQ심사 시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부과함.

〈표 2-6〉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현황

법령명	조항	제재기관	위반내용	처벌 및 제재내용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형사법원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 기본법	제95조(벌칙)	형사법원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 위원회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력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력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매출액 20/100미만 과징금

법령명	조항	제재기관	위반내용	처벌 및 제재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당해 발주처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하)
PQ심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발주기관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신인도 감점(-2)

## 2) 뇌물공여

-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행정벌과 행정제재로 구분할 수 있음.
-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 법 제95조의2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제82조의2에 따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해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PQ심사시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부과함.

〈표 2-7〉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현황

법령명	조항	제재기관	위반내용	처벌 및 제재내용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형사법원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 기본법	제95조의2(벌칙)	등록관청, 형사법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당해 발주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하)
PQ 심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발주기관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신인도 감점(-2)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부 위반행위를 제외한 대다수의 건설 관련 법령들은 규제의 목적, 의무 이행사항, 의무이행 대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및 제재의 대상 등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건설기술인이 중복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한정적임.
- 또한, 대부분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이행 주체는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업자/사업주이며,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유일함(〈표 2-8〉 참고).
  - 기술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도 개인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정의하고 위반 시 개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령이 존재하나, 개별 법령에서 정의한 ‘기술인’에 대한 처벌조항으로(〈표 2-9〉 참고), 위 법령들이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대부분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대한 위반행위는 자격의 불법 대여 및 알선, 거짓신고, 비밀유지 등 ‘기술인’으로서 윤리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주로 처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8〉 건설관련 법령별 의무이행 사항 및 주체,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의 종류

법령	주요 의무이행 사항	의무이행 대상 주체	처벌의 종류	
			행정벌	행징처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인 육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의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b>건설기술인</b>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영업정지/과징금, 등록말소, 벌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신고/등록, 건설공사도급/하도급, 기 술인 현장배치	건설사업자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록말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주, 근로자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중대재해처벌법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징역 및 벌금, 과태료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 유지관리, 설비 기준과 건 축물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사업주체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주택법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사업주체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등록말소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국기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 준수	중앙관서의 장/계약공무원, 계약상대자	-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표 2-9〉 건설산업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의 종류(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법령별 처벌수위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위반행위	사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하는 경우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엔지니어링기술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전력기술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전기공사기술자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기술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술자  (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술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하는 경우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하는 경우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엔지니어링기술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전력기술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전기공사기술자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기술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술자  (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법령별 처벌수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산업법 엔지니어링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인	전기공사법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술자	건축사법 건축사보	기술사법 기술사		
업무상 비밀 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내 업무정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 취소, 건축사보 의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에게 명예/자격/경력증 불법대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내 업무정지	2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내 인정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내 인정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내 업무정지	300만원 또는 자격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인정취소	인정취소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내 업무정지	자격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내 업무정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인정취소/인정 정지(3년내)	인정취소	인정취소					
자격취소/업무정지 중 업무수행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등락취소			
금품 제공 또는 요구				500만원 이하의			2년이하의 징역			

유인항위	법령별 처벌수위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간축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간축법	기술사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함	건설기술인	엔지니어링기술자	전력기술인	별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별금								이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 무단이탈	2개월 이내 업무정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내 업무정지								
중복근무/이중취업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2.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현황

### 2.1.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의 종류

- 건설 관련 법령들은 벌칙, 과태료 등 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행위에 대한 위반 발생 시 위반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유일함.
- 즉,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 처분’으로 구분하여 <표 2-10>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2-10> 건설기술인 대상 처벌 현황(건설기술진흥법)**

처벌의 종류		처벌의 성격	위반 행위	관련법
행정벌	벌칙	형사고발 (징역 또는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불성실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발생</li> <li>• 고의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여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결함 초래</li> <li>•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거짓신고, 경력증 불법 대여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li> </ul>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제89조
	과태료	금전적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미이수, 경력증 미반납 등 행정상 질서를 위반한 경우</li> </ul>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행정 제재 처분	업무정지	업무정지 (입찰, 업면허등록, 현장배치 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거짓신고, 경력증 불법 대여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li> <li>• 발주청의 시정지시 3회 이상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li> <li>• 공사현장 무단이탈</li> <li>• 고의 또는 중과과실로 재산상 손해 초래</li> </ul>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자격정지/취소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또는 불법대여</li> <li>• 공약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li> </ul>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벌점	벌점 부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한 건설공사 및 용역 등의 부실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p><b>(131개의 부실 측정기준 有)</b></p>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1) 벌칙

- 벌칙 규정이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임.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명시된 규정에 기반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과하거나 이를 동시에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피규제자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부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벌을 받게됨(표 11 참고)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양벌규정)에 따라 개인(또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또는 개인)에도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즉, 건설기술인이 업무 불성실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미작성·거짓 작성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됨.

〈표 2-11〉 건설기술인의 벌칙 위반행위 및 처벌

구분	위반행위
건진법 제85조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진법 제86조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진법 제87조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진법 제87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건진법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구분	위반행위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 12. 31.)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건진법 제8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구분	위반행위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 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과태료

- 과태료란 건설기술인이 행정상 질서를 위반할 시 가해지는 금전적 제재 사항으로서 형벌의 성격을 띠지는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의거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미이수, 업무정지에 따른 경력증을 미반납 등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자세한 위반행위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음.

〈표 2-12〉 건설기술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머. 법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버.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서.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3) 업무정지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력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 위반행위를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소속 업체의 공공입찰이나, 업면허등록, 현장배치 등에 활용이 불가하며, 상세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2-13〉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 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다.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위반 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고의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4)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경미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마.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24개월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 4) 벌점

- 벌점은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은 ①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거나, ②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에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측정기관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참여한 건설공사 및 용역 등의 부실 발생에 대해 건설기술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별점 부과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게됨.

## 2.2.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통계

-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의 기록 수정 또는 말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비롯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sup>3)</sup>.
- 또한, 동 고시 제2호 가목에 따라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업무정지, 부실별점 등의 업무 처리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 사항은 수탁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sup>4)</sup>를 기반으로만 처벌 통계를 분석하였음.

### 1)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자격정지/취소, 경고, 과태료 현황

-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업무정지, 자격취소 및 정지, 경고, 과태료 등 건설기술인이 처벌받은 사례는 총 7,699건임(<표 2-14> 참고).
- 2000년 이후 매년 100~200건에 불과하던 처벌사례가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1,401건, 1,2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대대적인 허위 경력신고 집중

3)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 제2020-117호)' 제1호 차목

4)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기술인 처벌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주의', '무혐의', '처분불가' 등 건설기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은 처분이나,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결측값, 미가입 값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단속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임.

- 위 집중 단속에 의한 업무정지 건을 제외하면 건설기술인의 처벌사례는 매년 200~30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처벌사례 중 업무정지가 총 6,160건으로 약 80%를 차지함.

〈표 2-14〉 연도별 건설기술인 처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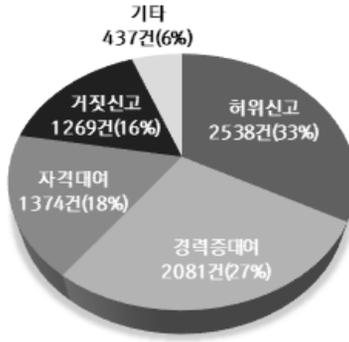
연도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총합계
2000년	.	.	13	64	1	78
2001년	.	2	32	49	12	95
2002년	.	.	29	31	13	73
2003년	.	1	105	.	39	145
2004년	.	.	216	.	79	295
2005년	.	.	206	36	59	301
2006년	.	.	408	60	64	532
2007년	.	1	147	76	38	262
2008년	.	.	143	86	25	254
2009년	9	.	154	66	17	246
2010년	7	1	122	44	16	190
2011년	29	1	59	20	17	126
2012년	25	.	55	25	16	121
2013년	32	.	86	42	9	169
2014년	15	.	125	90	21	251
2015년	2	.	35	25	8	70
2016년	8	.	216	26	7	257
2017년	3	.	230	35	22	290
2018년	2	.	1,356	24	19	1,401
2019년	1	.	648	8	8	665
2020년	.	.	1,216	11	18	1,245
2021년	1	.	348	15	33	397
2022년	1	.	211	8	16	236
<b>총합계</b>	<b>135</b>	<b>6</b>	<b>6,160</b>	<b>841</b>	<b>557</b>	<b>7,699</b>

- 건설기술인 처벌의 사유를 살펴보면(표 2-15), 허위신고, 경력증 대여, 자격대여, 거짓신고 등에 의한 처벌이 총 7,265건으로 전체 처벌사례 중 약 95%를 차지함.

- 즉, 대부분의 처벌 사유가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개인적 일탈행위'에 의한 것임.
- 반면, 시공관리 소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도와 상이시공, 감리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사례는 437건으로 전체 처벌사례 중 약 6%에 불과함(〈그림 2-1〉 참고).

〈표 2-15〉 건설기술인 처벌의 사유

처벌사유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총합계
허위신고		6	2,532			2,538
경력증대여			2,081			2,081
자격대여				828	546	1,374
거짓신고			1,269			1,269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93			93
시공관리소홀	24		15			39
부실설계	19		11			30
명의대여			29			29
부실시공	13		10			23
설계도와 상이시공	14		8			22
감리소홀	1		19			20
성실의무위반	7		6	2	4	19
현장무단이탈	13		5			18
발주청 시정명령 불이행			11			11
부실감리			10			10
부실자재사용	1		6			7
사전조사등소홀			7			7
시방기준미달	7					7
공사현장 무단이탈	6					6
품질시험미 실시	5					5
안전관리소홀	1		2			3
중대한 재해발생			3			3
기타	24	0	43	11	7	85
<b>총합계</b>	<b>135</b>	<b>6</b>	<b>6,160</b>	<b>841</b>	<b>557</b>	<b>7,699</b>



〈그림 2-1〉 건설기술인 처벌의 사유

## 2)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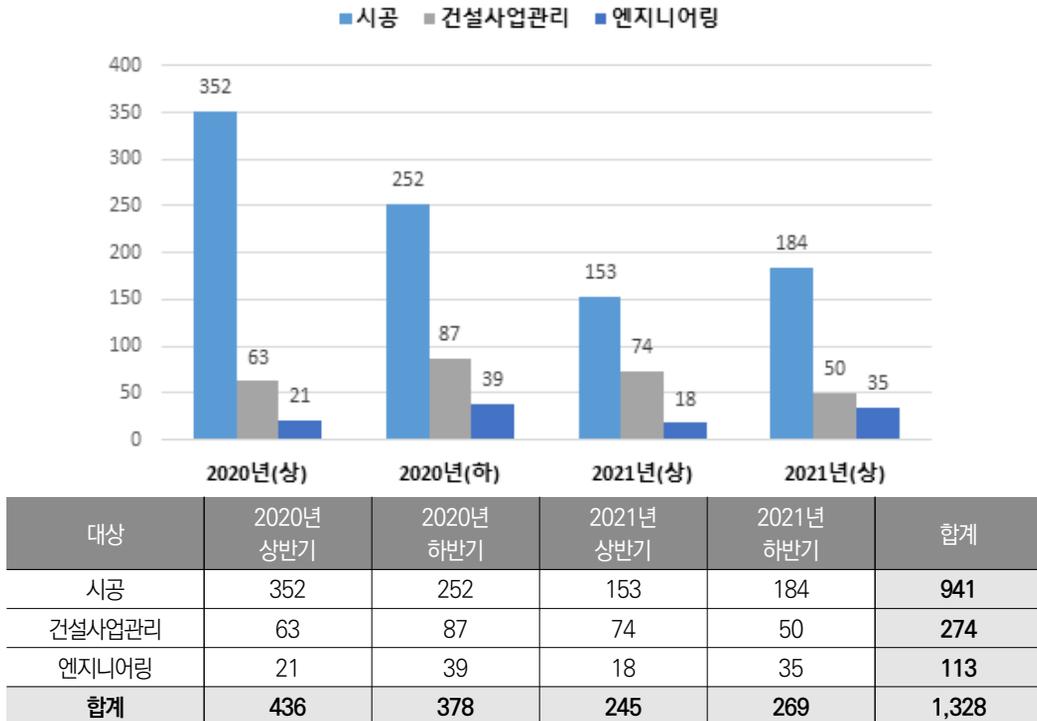
- 벌점 현황의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하 ‘KISCON’)'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벌점’자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KISCON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기술인 부실벌점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음.

### 가. KISCON 공개벌점

- KISCON의 공개벌점의 경우 최근 4반기(2020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간 건설업체에 부과된 벌점의 현황으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벌점부과번호, 반기별 평균벌점, 누계 평균벌점 등의 자료가 공개됨.
  - KISCON의 자료의 경우 업종별(시공, 건설사업관리, 엔지니어링) 벌점 현황분석이나 벌점부과번호를 통해 벌점의 사유를 유추하는 등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아닌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벌점으로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된 벌점 현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음.
- KISCON의 공개벌점을 토대로 벌점 현황분석 결과 건설공사 및 용역 등에서 안전, 시공·품질관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에 부과된 벌점은 지난 2년간(직전 4반기) 총 1,328건으로 분석됨.

- 반기별 약 300~400건의 별점이 건설업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업종별로 구분 시 시공업체계 941건으로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건설공사 별점 부과 현황('20~'21년)



- 건설업체에 부과된 별점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토공사의 부실',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불량',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등으로 인해 주로 별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17〉 건설공사 벌점의 부실 내용별 부과 건수('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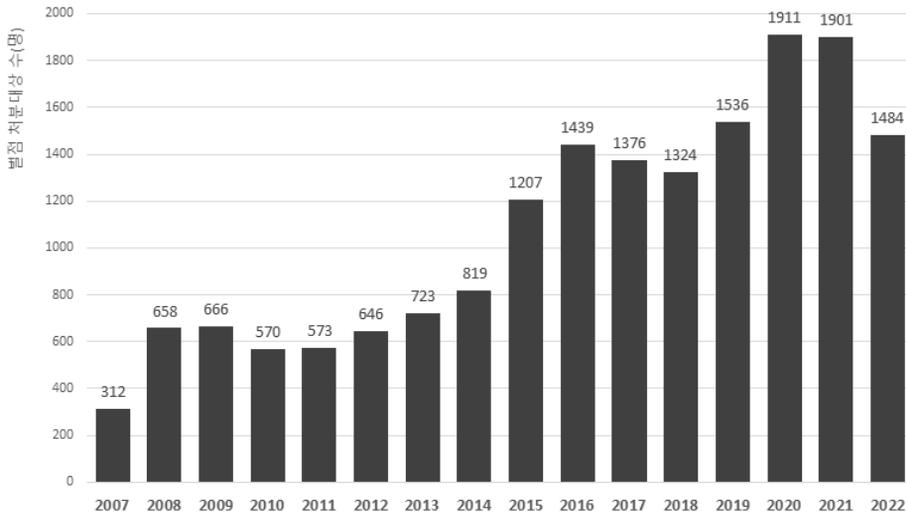
업종 (업종별 부과건수)	부실내용	부과 건수
시공 (1,055건)	<b>토공사의 부실</b>	<b>99</b>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5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38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13
	배수상태의 불량	9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12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7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23
	<b>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b>	<b>99</b>
	<b>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b>	<b>217</b>
	<b>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b>	<b>90</b>
	<b>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b>	<b>95</b>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42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87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2
	<b>설계도서와 다른 시공</b>	<b>116</b>
	계측관리의 불량	6
	건설사업관리 (404건)	<b>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b>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18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12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31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17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50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55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11
<b>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b>		<b>93</b>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0
PQ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사업자만 해당)		1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0

업종 (업종별 부과건수)	부실내용	부과 건수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3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4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사업자만 해당)	2
	하도급 관리 소홀	7
엔지니어링 (142건)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28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4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5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12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21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31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3
	건설엔지니어링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5
	PQ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사업자만 해당)	1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28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3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1

####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부실벌점 통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벌점 부과 현황을 KISCON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벌점의 유효기간인 2년간 반기별로 처분내용을 관리하고 있음.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건설기술인의 벌점 최초 부과 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기술인 벌점 처분현황을 분석함.
- 건설기술인 부실벌점 통계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만 벌점 처분현황을 알 수 있으며, KISCON의 공개벌점과는 다르게 업종별 부과 현황이나, 부과 사유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부과 현황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건설기술인 벌점 통계 분석 결과, 건설공사 벌점이 도입된 2007년에는 312건에 불과하던 건설기술인 벌점 부과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11건까지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음(그림 2-2).
- 이는 건설안전 경각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장점검 횟수가 증가<sup>5)</sup>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벌점 부과 건수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2〉 연도별 건설기술인 벌점 처분대상 수

### 3. 소결

- 건설 관련 법령들은 법의 도입 취지에 맞는 규제를 통해 의무 이행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규제를 의무이행 대상자가 위반 시 벌칙, 과태료 등 조항을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제재의 종류에는 행정형벌(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등록말소, 입찰참가제한 등)등이 있음.

5) 2014년 : 4,868개 → 2018년 : 6,487개

- 건설 관련 법령들은 법령마다 규제의 목적 및 대상이 구분되기에 중복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였음.
  -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행위에 관해 법령 간 중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나 처벌 대상이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업자(기업)에게만 해당하며, 위반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처벌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떨어짐.
- 또한, 건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주된 의무 이행의 대상은 사업자 또는 사업주로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유일함.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 중 행정벌(벌칙, 과태료)과 업무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여, 개선의 여지가 적으며, 대부분 위반행위가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거짓신고, 불법 대여 등 건설기술인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벌점’ 제재 처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부실에 따라 처분되기에 매년 1,400~1,900여 건 처분되고 있으며, 부실을 측정하는 기준 또한 ‘95년 벌점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있음에도 다소 모호한 측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즉,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중 ‘벌점’이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개선이 필요한 제재라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대상 제재를 위반행위의 특성 및 처벌 빈도를 고려하여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음(그림 2-3 참고).
  - 건설기술인으로서 의무 위반이나 업무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의 처벌로 건설기술인에게 실제로 처벌되는 빈도가 낮으며 위반행위의 특성 및 처벌 기준이 명확하여 타법과의 중복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처벌 기준은 본 연구의 개선 대상에서 제외함.

- 자격 불법대여, 경력 허위신고 등 건설기술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개인적 일탈행위에 의한 처벌 기준으로 건설기술인에게 실제로 처벌되는 빈도는 매우 높으나 위반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처벌 기준에 대한 개선은 어려움. 단, 타법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비교를 통해 처벌 수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함.
-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미한 부실 발생의 책임에 따른 벌점으로 건설기술인에게 실제로 처분되는 빈도가 높음. 또한, 벌점의 경우 타 제재처분과 비교하여 비교적 경미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에 처벌 기준에 대한 합리성 및 명확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구분	위반행위	차별기준 명확성	차별빈도	차별기준 개선가능성	개선방향
① 안전사고 유발 (법령단위)	과실 또는 고의로 시시설물 중대한 손괴 초래하여 인명피해 업무를 게을리하여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결함 초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시정명령 3회 이상 또는 지시 불이행 공사현장 무단이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 빈도 낮음</li> <li>•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명확하여 타법과 중복가능성이 낮음</li> <li>• 개선 대상에서 제외</li> </ul>
	② 개인적 일탈 행위	교육훈련 미이수, 업무정지에 따른 경력증 미반납 타인에게 명예/사적/경력증 불법대여 근무처, 경력 등의 거짓신고/변경신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빈도는 높으나, 위반행위의 특성 감안 시 처벌기준 개선은 어려움</li> <li>• 단, 타법과 비교를 통한 처벌 수위의 검토 가능</li> </ul>
③ 부실시공 아기 (법정제도)	건설공사 및 용역의 경미한 부실 발생의 책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과의 중복여부, 처벌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li> </ul>

〈그림 2-3〉 위반행위 특성에 따른 건설기술인 제재의 구분



# 제3장 벌점제도 현황 및 문제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 제3장 벌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 벌점제도 개요

- 벌점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도입되었음.
  - 199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 의해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가 최초 신설되었으며, 1995년 10월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제정됨.
- 벌점제도는 1995년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특히, 벌점산정방식, 벌점 경감제도, 불이익 적용 관련 부분은 도입 이후 규정이 지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벌점 경감제도의 확대, 벌점 산정방식의 명확화,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등 업체와 건설기술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임.
  - 1997년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공동도급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으로서 공동이행 방식은 대표자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토록 함
  - 1999년 : 벌점 산출 시 점검횟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식 도입, 이의신청제도 신설
  - 2003년 : 공동도급방식 중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출자 비율만큼 벌점을 부과, 이의신청절차를 사후절차에서 사전절차로 변경
  - 2005년 : 벌점 산정방법 개선(벌점 합을 건설공사(용역)수로 나눔)
  - 2011년 : '부실벌점'에서 '벌점'으로 명칭 개정, 벌점 공개 규정
  - 2014년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 2021년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2022년 :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벌점 경감 대상 확대

〈표 3-1〉 벌점제도 주요 개정 내용 및 연혁

개정일	개정대상	주요 개정내용
1995. 01. 05.	법	•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신설
1995. 10. 12.	시행규칙	•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신설
1996. 09. 07.	시행규칙	• 부실벌점 부과 대상별 통보기관의 구분
1997. 08. 25.	시행규칙	•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Σ벌점/Σ점검공사(용역)수) • 공동도급 벌점부과 방법 신설 • PQ 불이익 기준 개정
1999. 02. 18.	시행규칙	•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Σ벌점/Σ점검횟수) • 업체·기술자 부실측정기준 개정 및 부과벌점 조정 • 이의신청 제도 신설
1999. 12. 05.	시행규칙	•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정기간 개정 (3년 → 2년) • 통보기관 일원화
2001. 01. 16.	법	• 부실측정 시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부실측정 대상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 건축사 포함
2001. 08. 13.	시행규칙	• PQ시 불이익 기준 개정
2003. 04. 18.	시행규칙	• 공동도급 벌점부과방법 개정 (공동이행: 출자비율만큼 벌점 부과) • 이의신청 제도 개정 (착오 시 정정 후 통지 신설)
2004. 12. 31.	법	• 발주청 범위에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을 포함
2005. 07. 01.	시행규칙	•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개정 - 기관별 평균벌점 산정방법 : 점검횟수로 나누는 것 폐지 - 반기별 평균벌점 산정방법 : 통보기관 수로 나누는 것 폐지 • PQ 불이익 기준 개정 • 이의신청제도 개정 • 측정기준 및 경감제도 조정·추가·삭제 • 업체 및 기술자 동시 부과 명시
2006. 12. 09.	시행규칙	• 부실벌점 경감규정 조정
2007. 05. 17.	법	• 타당성 검토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규정 신설
2007. 12. 31.	지방청 위임	•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08. 10. 02.	시행규칙	• 건설기술자 업종 변경 시 부실벌점 승계 명시
2010. 12. 20.	시행규칙	•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추가

개정일	개정대상	주요 개정내용
2011. 01. 01.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li> <li>• PQ 불이익 기준 개정</li> <li>• 부실측정기준 개정(추가, 명확화)</li> </ul>
2011. 09. 16.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벌점 → 벌점으로 명칭 변경</li> <li>• 벌점공개 규정 마련</li> <li>• 감리전문회사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li> <li>•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li> </ul>
2012. 03. 16.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점공개 절차 등 규정 (추가)</li> <li>• 벌점산정방식 개정 (Σ벌점/Σ점검현장수)</li> <li>•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중대한 과실 → 과실)</li> </ul>
2014. 05. 23.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li> </ul>
2017. 01. 16.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국토청이 타 발주청(민간발주자 포함) 등의 현장에 부과한 벌점도 벌점 총괄표에 의거 관리하고 종합관리위탁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및 해당 발주청에 직접 통보토록 개정</li> </ul>
2019. 07. 01.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대상 확대</li> </ul>
2021. 01. 01.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점 산정방식을 변경 (평균방식 → 합산방식)</li> <li>• 벌점 경감제도 도입</li> <li>•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및 운영규정 제정</li> <li>• 부실측정기준의 명확화</li> </ul>
2023. 01. 01.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기술인의 일괄적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li> <li>• 벌점 부과요건의 조정 및 보완</li> <li>•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li> <li>• 관리수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은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 확대</li> </ul>

- 벌점제도와 관련한 최종 개정은 2023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이 부과되던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벌점 부과 요건에 대한 조정 및 보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등 벌점 경감대상 확대가 주된 개정 사항임.
- 벌점제도 도입 당시와 현행제도를 비교해보면 벌점의 크기, 벌점 합산기간, 공동도급에 대한 벌점 부과방법, 평균벌점 계산 방법, 경감제도, 불이익 적용 등에 변화가 있었음.
  - 벌점크기 : 당초 업체 및 건설기술인을 분리하여 총 6개의 적용기준으로 1에서 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업체와 건설기술인을 통합하여 ①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③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해 1에서 3점까지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합산기간 : 당초 벌점은 최근 3년(6개 반기)의 벌점을 기초로 하였으나, 1999년 최근 2년(4개 반기)도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공동도급 : 도입 당시 공동도급현장의 경우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공동이행 시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벌점계산 : 당초 ‘벌점 합계/점검현장 수/발주청 수’를 이용하여 벌점을 산정하였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청 수 및 점검 현장 수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 합계’를 통해 벌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벌점 경감제도 : 최초 벌점제도 시행 당시 신기술 적용, 시공평가 결과 점수, 표창, 우수건설업자에 대해 벌점 경감제도를 적용하여 벌점 부과 대상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인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였음. 이 후 경감기준은 지속해서 축소되어 2011년 경감기준이 전면 삭제되었으나,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사망사고 및 관리우수 업체에 대한 경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표 3-2〉 벌점제도 주요 변경내용(도입 당시-현행)

구분	도입 당시(1995.1)	현행 제도(2023.1)
벌점크기	1~10점 (업체 및 기술인 분리, 6개 적용기준)	1~3점 (업체 및 기술인 통합, 3개 적용기준)
합산기간	3년(6반기)	2년(4반기)
공동도급	공동이행 시 대표사만 부과	공동이행 시 출자비율로 부과
벌점계산	벌점/점검 횟수/발주청 수	벌점 합/점검현장 수
벌점 경감제도	신기술 적용 시공평가 결과 점수 표창, 우수건설업자	무사망사고, 관리우수현장

## 2. 벌점제도의 운영 및 관리체계

-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벌점제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3-3〉 건설공사 벌점 개요 및 측정방식

구분	내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li> </ul>
측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li> <li>•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가 가능</li> </ul>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업체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li> <li>• 건설기술인 : 위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li> <li>• <b>(공동이행방식)</b>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li> <li>• <b>(분담이행방식)</b> 분담업체별로 부과</li> </ul>

### 2.1 벌점의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함. 벌점을 부과(측정)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벌점은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 내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2.2 벌점의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 1) 벌점 적용대상

- 벌점의 측정대상은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에 한함.
- 또한,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가 가능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항 사목에 따른 “벌점부과기한”에 따름.

〈표 3-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한

<p><b>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b></p> <p>5. 벌점 측정기준</p> <p>사.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p>
---

- 벌점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부과함.
-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하되, ‘분담이행방식’에서는 분담 업체별로 부과함.

### 2) 벌점 산정방법

- 기존의 벌점합산 방식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함

- 예를 들어, 한 반기에 출자 비율을 고려한 100개의 현장에서 별점을 총 10점 받았을 때, 별점 0.1점(10/100개)으로 산정됨(평균 합산방식)
- 그러나 2020년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별점합산 방식은 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 최근 2년간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별점의 합을 2년으로 나누어 산정한 별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 별점으로 함.
- 예를 들어, 한 반기에 출자 비율을 고려한 100개의 현장에서 별점을 총 10점 받았을 때, 현장의 수와는 상관없이 별점 10점으로 산정됨(누계 합산방식)

〈표 3-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별점 산정 예시

$\textcircled{1} \text{ 반기별 평균별점} = \frac{\text{별점합계}}{\text{점검현장수합계}}$ $\textcircled{2} \text{ 누계평균별점} = \frac{\text{최근4개반기 평균별점합계}}{2}$
---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측정기관에서 통보한 해당 업체의 별점 합계를 점검한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의 합계로 나누어 업체별 평균별점을 산정하며, 필요시 통보 받은 별점 관련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3) 별점의 적용

-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점을 적용 및 부과함.
- 별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측정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들에게 각각 부과하나,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별점 부과함.

#### 4) 벌점의 적용 제외

- 벌점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각각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

〈표 3-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적용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li><li>■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li><li>■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li><li>■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li><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 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li><li>■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li><li>■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위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li></ul>
---

### 2.3 벌점의 부과기준

-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의한 부실내용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 등에게 각각 부과함. 다만, 기재된 부실내용 중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또한, 23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 및 건설기술인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던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였음.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
1) 토공사의 부실 2)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4) 철근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사공 상태의 불량 5) 배수상태의 불량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7) 시공 단계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10) 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13) 시험설 규모·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 불량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16) 레미콘 플랜트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9) 계속관리의 불량	1) 설계도서의 기반 시공상태의 확인 소홀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3) 기성 및 예비 준공경사의 소홀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5)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8) 건설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기술인의 임의변경, 관리 소홀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15)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인의 현장시공상태점검 소홀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18) 하도급 관리 소홀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 잘못 2) 토질·기초 조사 잘못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5)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그림 3-1) 벌점 측정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 2.4 벌점의 통보

### 1) 벌점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

-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 포함) 및 건설기술인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영 별표8 제5호 벌점측정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함.

### 2) 벌점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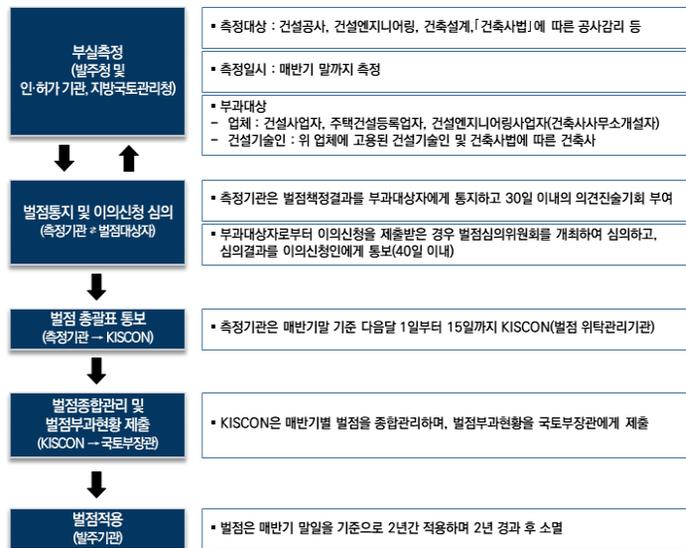
-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영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측정기관별로 구성·운영)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측정기관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 정정

〈표 3-7〉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li> <li>▪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li> <li>▪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측정기관이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부실을 측정한 측정기관에 소속된 자는 제외)로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및 법 제54조1항에 따른 점검업무 담당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li> <li>- 위의 공사감독·부실측정·점검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li> <li>-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ul> </li> <li>▪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li> </ul>
---

### 3) 측정기관이 점검(부실측정)·벌점부과를 한 후 벌점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 측정기관은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를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및 제38호 서식의 벌점총괄표에 작성·관리하고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함



〈그림 3-2〉 벌점제도 관리 체계

### 3. 벌점의 영향

- 최초 벌점제도 도입 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시 PQ감점’, ‘입찰참가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 시 감액(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등 총 3가지였음.
- 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부실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주택감리 적격심사 시 감점’,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용자 제한’ 등 벌점을 연계한 새로운 불이익 관련 법령들이 도입되었음.
- 현재 벌점제도와 연계된 불이익 관련 법령은 <표 3-8>과 같음.

〈표 3-8〉 벌점제도 불이익 관련 법령

법	근거조항	불이익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 법 제 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2항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가.	PQ감점
	•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23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4항 •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항,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제1호 라.	시공능력평가액 감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항 •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호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2호	입찰참가자격제한
주택법	• 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2항 • 국토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2항,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주택감리 적격심사 감점
	• 제54조(주택의 공급) 제1항 제2호 가목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 모집시기) 제3항, [별표4] 〈입주자모집 시기〉	선분양제한

법	근거조항	불이익 내용
주택도시 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6항</li> <li>• 시행규칙 제11조(출자 또는 용자의 제한) 제1항, [별표 3] &lt;기금의 출자 또는 용자 제한 기준&gt;</li> </ul>	주택도시기금 용자 제한

- 앞서 언급된 벌점제도에 의한 불이익 중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감점, ②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감점, ③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의 감점, ④감리자 지정기준의 감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9〉 벌점제도와 연계된 건설기술인 관련 불이익

불이익 내용	대상	불이익 대상	세부 불이익 내용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감점	설계 등 용역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건설사업관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여기술인	<table border="1"> <tr> <td>누계평균 벌점</td> <td>1점 이상 2점 미만</td> <td>2점 이상 5점 미만</td> <td>5점 이상 10점 미만</td> <td>10점 이상 15점 미만</td> <td>15점 이상 20점 미만</td> <td>20점 이상</td> </tr> <tr> <td>점수(감점)</td> <td>0.2</td> <td>0.5</td> <td>1</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관계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②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감점	건설공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p>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p> <table border="1"> <tr> <td>누계평균 벌점</td> <td>1점 이상 2점 미만</td> <td>2점 이상 5점 미만</td> <td>5점 이상 10점 미만</td> <td>10점 이상 15점 미만</td> <td>15점 이상 20점 미만</td> <td>20점 이상</td> </tr> <tr> <td>점수(감점)</td> <td>0.2</td> <td>0.5</td> <td>1</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참여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참여기술인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참여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불이익 내용	대상	불이익 대상	세부 불이익 내용
③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등급 감점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건설기술인	2년간 해당 수행분야(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의 역량지수를 감점(1점)
④ 감리자 지정 적격심사 감점	주택건설공사	총괄감리원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의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분야별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4. 타법의 벌점제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제도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령별 벌점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2'에 수록하였음.

### 4.1.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표 3-1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3]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등
부과대상	• 건설사업 수급인
부과 벌점	• 1~3점
합산벌점	• 최근 3년간 벌점 합
불이익 적용	• 10점이 되면 영업정지
이의신청	• 없음
벌점 경감제도	• 사업자 간 협력 평가 우수
벌점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공개	• 없음

#### 4.2. 전력기술관리법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해야 함.
-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은 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실 사실의 확인과 부실 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음.

〈표 3-1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li> <li>•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li> <li>•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1]의 4</li> <li>•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6조 및 [별표 4]</li> </ul>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ul>
부과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li> <li>• 시·도지사</li> <li>•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li> </ul>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업체, 감리업체, 소속 전력기술인</li> </ul>
부과 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점</li> </ul>
누계 평균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 벌점의 합계 / 2</li> </ul>
불이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li> </ul>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li> </ul>
벌점 경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벌점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기기술인협회</li> </ul>
벌점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4.3. 소방시설공사법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6조에 따라 국가 등은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협회에 즉시 통보해야 함.
-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음.

〈표 3-12〉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li> <li>•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8</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별표4의3], [별표4의4]</li> <li>소상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3조, 제6조 및 [별표3]</li> </ul>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 / 소방청(소방산업과)</li> </ul>
부과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li> </ul>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li> <li>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li> </ul>
부과 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점</li> </ul>
누계 평균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년간 벌점의 합계 /2</li> </ul>
불이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점수</li> </ul>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과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li> </ul>
벌점 경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벌점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업자협회</li> </ul>
벌점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함.
  - 산림기술용역업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함.

〈표 3-13〉 산림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4]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목재산업과)
부과기관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
부과대상	•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부과 벌점	• 1, 2, 3점
누계 평균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의 합계 / 2
불이익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점수
이의신청	• 부과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벌점 경감제도	• 전문교육 이수 시 벌점 경감
벌점관리기관	• 한국산림기술인회
벌점공개	• 산림기술정보체계 홈페이지

#### 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하도급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표 3-14〉 하도급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
주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대상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부과 벌점	• 0, 0.25, 0.5, 1.0, 2.0, 2.5, 3.0점
누계 평균벌점	• 직전 3년간 동안 벌점의 합계
불이익 적용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이의신청	• 없음

구분	내용
벌점 경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li> <li>특별교육 이수</li> <li>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li> <li>현금결제 우수업체</li> <li>전자입찰비율 80% 이상</li> <li>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등급 이상</li> </ul>
벌점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li> </ul>
벌점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li> </ul>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 상생협력법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표 3-15〉 상생협력법에 의한 벌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li> <li>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및 [별표]</li> </ul>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li> </ul>
부과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부</li> </ul>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기업</li> </ul>
부과 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2.0, 3.1, 5.1점</li> </ul>
누계 평균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 3년간 동안 벌점의 합계</li> </ul>
불이익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가자격의 제한</li> </ul>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벌점 경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창, 우수기업선정, 교육이행 등</li> </ul>
벌점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부</li> </ul>
벌점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 5. 소결

-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직접적인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제재 처분인 벌점제도는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에 의한 행정제재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처벌의 효력은 형벌에 버금가는 효력이 발생함.
  - 경제적 측면 : PQ 참여 불가로 일시적 실업 우려, 불복 절차 수행 비용 등 손실
  - 사회적 측면 : 건설기술인의 근로 의지 좌절, 건설기술인에 대한 이미지 실추
- 벌점의 측정기준의 중복성 및 명확성에 대한 업계 개선 요구에 따라, 벌점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선행연구도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건설기술인이 아닌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관점에서 벌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그침.
- 또한, 타법의 벌점제도와 비교해볼 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제도는 벌점에 대한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기술인과 같이 개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이 없어 건설기술인의 안전예방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표 3-16 참고).
  - 벌점의 산정 대상과 벌점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타 법에 의한 벌점제도가 벌점 부과 대상에게 단순히 PQ감점에 대한 불이익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벌점제도는 PQ감점 외에도 시공능력평가 감점, 선분양 제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 등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림기술법의 경우 산림기술자가 특별교육 이수 시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이 존재하나, 건진법의 벌점제도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벌점 경감제도가 존재함.

〈표 3-16〉 법령별 벌점제도 종합비교

구 분	산정 방식	주요 벌점 부과사유	벌점 유효기간	벌점 부과 대상	불이익 적용	벌점 경감기준
건설기술진흥법	2년합 ÷2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입찰참가자격제한, , 종심제 감점, 역량지수 감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선분양 제한 등	무사망사고, 관리우수
건설산업기본법	3년합	하수급인 관리 부실	3년	업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	사업자 간 협력 평가 우수
전력기술관리법	2년합 ÷2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
소방시설공사법	2년합 ÷2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년합 ÷2	부실시공	2년	업체, 기술인	PQ 감점	전문교육 이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년합	하도급 거래 질서 저해행위	3년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표준계약서 사용, 특별교육 이수, 표창, 현금결제, 전자입찰 이행실적평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년합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3년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표창, 우수기업선정, 교육이행 등

제4장

#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제도 개선방안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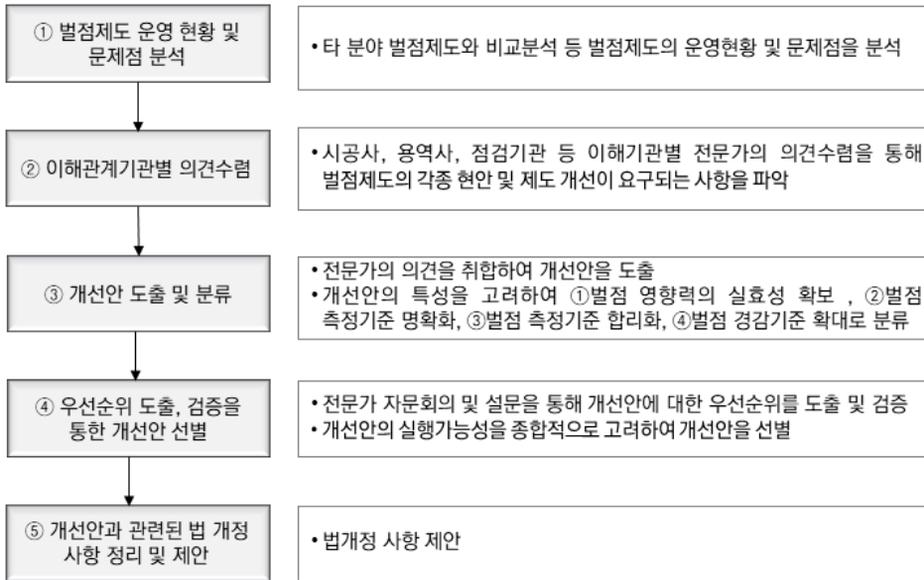




## 제4장 건설기술인 대상 벌점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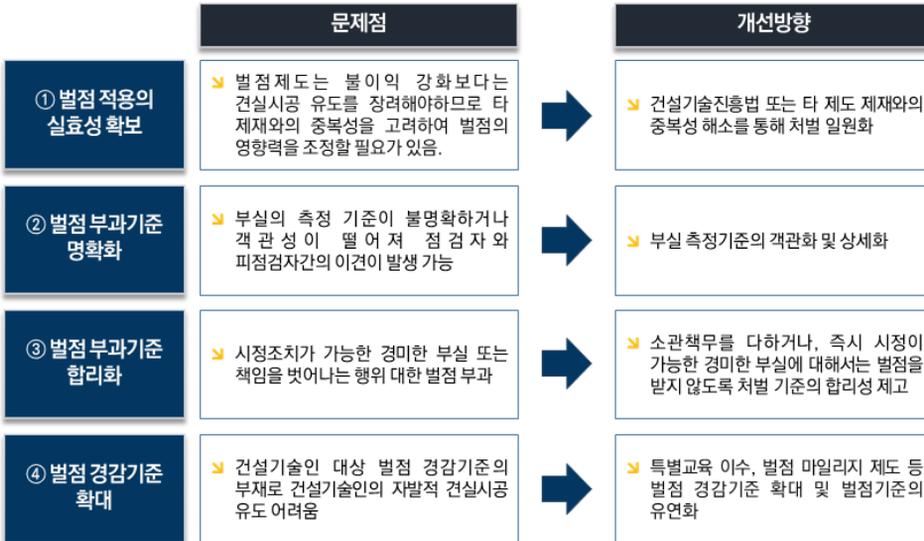
### 1. 벌점제도 개선방안 도출 절차

- 벌점제도의 개선방안은 앞서 분석된 벌점제도 개요, 벌점 부과 현황, 관련 불이익 등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적용 가능한 타 제도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벌점제도 운용상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안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시공사, 용역사, 점검기관 등 이해기관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전문가의 의견과 유사제도 및 사례분석을 취합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안의 특성에 고려하여 ①벌점 영향력의 실효성 확보 , ②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③벌점 측정기준 합리화, ④벌점 경감기준 확대로 구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 및 검증
  -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선별하고 법개정 사항 제안



〈그림 4-1〉 벌점제도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 이해관계자별 벌점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렴한 결과 벌점의 ①실효성, ②명확성, ③합리성, ④경감기준 등 총 4가지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각 구분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 4-2〉 벌점제도 개선방안 (1)

## 2. 벌점제도 개선방안

- 벌점제도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유사 제도의 사례분석을 취합하여 도출하였으며, 개선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벌점 영향력의 실효성 확보, ②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③벌점 측정기준 합리화, ④벌점 경감기준 확대로 구분하였음.

○ 개선안의 특성을 구분한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벌점 적용의 실효성 확보	1.1.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정지' 기준과의 중복성 해소
	1.2. 건설기술진흥법 '벌칙' 기준과의 중복성 해소
	1.3.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의 중복성 해소
②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	2.1. '소홀히' 표현의 구체화
	2.2. '설치상태 불량' 표현의 구체화
	2.3. '주요 자재' 등 용어의 구체화
	2.4. '미흡한' 표현의 구체화
	2.5. '필요한 조치' 표현의 구체화
③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	3.1.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보완 기회 부여
	3.2. 건설기술인 확보에 대한 벌점 기준 삭제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예비준공' 업무 관련 벌점 기준 삭제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관련 벌점 기준 개선
④ 벌점 경감기준 확대	4.1. 교육 이수를 통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4.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그림 4-3〉 벌점제도 개선방안 (2)

### 2.1. 벌점 적용의 실효성 개선

- 부실시공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벌점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벌점제도는 피규제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보다는 견실시공 장려를 통해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외 타법률에서는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제도는 벌점 부과 기준의 부실 항목 및 부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의 균형 유지를 위해 타 제재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벌점의 영향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직접적인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벌점제도는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 처분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제재와의 중복성 해소를 통해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1)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정지’ 기준과의 중복성 해소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p><b>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b></p> <p>5. 벌점 측정기준</p> <p>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p> <p>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p> <p>    다) <b>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b></p>
---

-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벌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위반행위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표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p><b>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b></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p>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b>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b></p>
--

- 상위법에 의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고 있는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설기술진흥법 ‘벌칙’ 기준과 중복성 해소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3〉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p> <p>5. 벌점 측정기준</p> <p>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p> <p>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p> <p>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b>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b></p>
---

- 그러나 정기안전점검의 미실시에 대한 처벌은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에 의거 “62조제4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표 4-4〉 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벌

<p><b>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b></p> <p>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b>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b></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p>

- 상위법에 의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3) 벌점에 따른 불이익 중복(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는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는 ①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②건설사업관리, ③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됨. 사업별 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별로 세부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표 4-5〉 참고)

〈표 4-5〉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별 평가항목 (배점)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 (60)	가. 참여기술인 (45)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b>다. 신용도</b>	<b>다. 신용도 (15)</b>	<b>다. 신용도 (10)</b>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마. 업무중첩도	마. 교체빈도 (5)	마. 업무중첩도 (10)

- 위 평가항목 중 ‘다. 신용도’의 경우 입찰참여자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항목임.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신용도’ 평가항목에 감점을 받음(〈표 4-6〉 참고)

〈표 4-6〉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및 벌점에 대한 불이익

<b>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b> <b>[별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b>	
분야별 평가기준 가. ~ 나. (생략) 다.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그러나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또는 벌점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국토부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시 업무정지 또는 벌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역량점수 감점을 하고 있음(〈표 4-7〉 참고)

〈표 4-7〉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시 벌점에 대한 불이익

<b>[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b>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1) ~ 7) (생략)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초과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 건설기술인이 부과받은 벌점에 따른 불이익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감점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감점 등 이중으로 가해지고 있으므로, 벌점에 의한 역량지수 감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함.
- 앞서 언급한 벌점 측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표 4-8〉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1)

No.	현행	개정(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1)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b>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lt;삭 제&gt;</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b>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b>
2)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lt;삭 제&gt;</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b>

〈표 4-9〉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내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개정(안)

No.	현행	개정(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3)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1) ~ 7) (생략)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 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1) ~ 7) (생략) <b>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 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b>

No.	현행		개정(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b>감 점 기 준</b>	<b>감 점</b>	<b>감 점 기 준</b>	<b>감 점</b>
	3개월 초과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del>3개월 초과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del>	<del>3</del>
	3개월 이하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del>3개월 이하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del>	<del>2</del>
	벌점을 받은 경우	1	<del>벌점을 받은 경우</del>	<del>1</del>

## 2.2.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

- 벌점제도가 1995년 신설된 후 부실 판단에 대한 모호함, 중복성, 유사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최근 들어 벌점 측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 부과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벌점 측정기준’)을 보면, 여전히 처벌 대상, 책임 범위, 부실시공의 판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때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함.
- 따라서 벌점 부과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개선을 위해 모호한 벌점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벌점 부과 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 ‘소홀히’ 표현의 구체화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 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벌점을 1점 부과하고 있음.

〈표 4-10〉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1)

<p>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p> <p>1) 토공사의 부실</p> <p>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p> <p>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p> <p>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b>소홀히</b>하여 토사 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p>
--

- 그러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은 부실 여부 판단 시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홀히"라는 표현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에 명시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관리업무 위반에 따라 토사 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라고 변경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설치상태 불량' 표현의 구체화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상태의 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11〉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2)

<p>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p> <p>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p> <p>다) <b>설치상태의 불량</b></p> <p>가) 가설구조물의 <b>설치불량</b>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가설구조물의 <b>설치불량</b>(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

- 그러나 '설치상태의 불량'라는 표현은 부실여부 판단 시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설치상태의 불량", "설치불량"이라는 표현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변경하여 명확한 위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 자재' 등 용어의 구체화

- 현행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에게 별점 3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12〉 불명확한 별점 부과기준 예시 (3)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b>주요 자재</b> 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

- 그러나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정의는 현장 또는 실무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요 자재”라는 용어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부고시)에서 정의하는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4) '미흡한' 표현의 구체화

- 현행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이“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 포함) 현장의 골재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에게 별점 2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13〉 불명확한 별점 부과기준 예시 (4)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b>미흡한</b>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

- 현장의 골재 관리 상태에 대한 해석은 점검자와 피점검자간 이견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미흡한’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흡한”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고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미달한 경우”라고 변경하여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5) ‘필요한 조치’ 표현의 구체화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건설기계·기구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하고 있음.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의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b>필요한 조치</b> 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은 점검자와 피점검자간 이견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건설 기계 관리 업무처리 규정(국토부훈령)’에 따른 조치”로 명확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벌점 측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표 4-14〉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2)

No.	현행	개정(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1)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 토공사의 부실 가) ~ 나) (생략)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 토공사의 부실 가) ~ 나) (생략)

No.	현행	개정(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다) <b>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하여</b> 토사 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다) ' <b>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b> '에 따른 <b>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b> 토사 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 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b>설치상태의 불량</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 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b>설치상태의 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b>
3)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b>주요 자재</b> 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 다) (생략)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b>주요 자재(자급(관급) 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b> 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 다) (생략)
4)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생략)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 관리상태가 <b>미흡한</b>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생략)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생략)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 관리상태가 ' <b>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b> '에 따른 <b>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미달한 경우</b> ,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생략)
5)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b>필요한 조치</b> 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 다) (생략)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 <b>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b> '에 따른 <b>조치</b> 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 다) (생략)

### 2.3. 벌점 부과기준 합리화

- 부실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실공사에 비교적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거나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벌점제도의 기본 취지가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불이익 강화가 아닌 부실시공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 경미한 부실에 대한 벌점 기준 완화가 제도의 취지의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1)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보완 기회 부여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또는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은 착공전 발주자에게 승인받고, 발주자에 제출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의 내용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표 4-15〉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1)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b>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b>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b>

- 따라서 시정명령을 통해 건설사업자 등에게 한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내용 보완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별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에 대한 별점기준 삭제

- 현행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별점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기술인 배치 또는 확보에 대한 의무 이행 주체는 업체(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배치 대상인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별점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볼 수 있음.

〈표 4-16〉 불합리한 별점 부과기준 예시 (2)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3)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b>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b>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b>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b> 나)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b>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b>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b>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b>
---

- 따라서 건설기술인 배치 또는 확보와 관련된 별점 부과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한하며, 건설기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예비준공’ 업무 관련 별점 기준 삭제

- 현행 별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별점을 부과하고 있음.

〈표 4-17〉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3)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기성 및 <b>예비</b>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그러나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인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예비 준공검사가 아닌 준공검사의 소홀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함.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관련 벌점 기준 개선

- 현행 벌점 측정기준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지연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별정 측정기준에서 명시된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또는 제출”이라 기준은 점점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현장에서 이행하였느냐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음.

〈표 4-18〉 불합리한 벌점 부과기준 예시 (4)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b>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b> 하지 않은 경우, ...(중략)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b>제출</b> 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중략)
--

-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또는 ‘제출’과 같은 용어를 삭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부과는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후 보완사항 확인에 국한하여야 함.

- 앞서 언급한 벌점 측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표 4-19〉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개정(안) (3)

No.	현행	개선안
	벌점 측정기준	벌점 측정기준
1)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b>〈삭 제〉</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인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b>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b>
2)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3)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b>〈추 가〉</b> 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b>〈추 가〉</b>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 13)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b>(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만 해당한다)</b> 다)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b>(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만 해당한다)</b>
3)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기성 및 <b>예비</b>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기성 및 <b>예비</b>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b>확인</b>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b>제출</b> 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b>확인</b>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b>검토</b> 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2.4. 벌점 경감기준 확대

- 건설기술진흥법 외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법률에서는 벌점의 및 경감기준을 규정하여, 피규제자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유인중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도급법」 시행규칙,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은 등은 소멸·경감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규제자들의 개선행위에 대해 벌점을 경감하고 있음

〈표 4-20〉 타법에서 규정하는 벌점제도의 경감기준

법률	경감기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을 이수 : 35시간 당 벌점 7점 경감</li> </ul>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점</li> <li>•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 0.5점 (대표자), 0.25점(관련 업무담당 임원)</li> <li>•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 2점</li> <li>• 현금결제 우수업체 : 1점 (현금결제비율 100%), 0.5점(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li> <li>•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 0.5점</li> <li>•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 3점(최우수), 2점(우수), 1점(양호)</li> <li>• 발주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0.5점)</li> </ul>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 또는 우수기업 선정: 2점</li> <li>• 법률에 따른 교육명령 이행 : 0.5점(위탁기업 대표자), 0.25점(관련 업무 담당 임원)</li> </ul>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 :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li> </ul>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 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 처분벌점 20점 감경</li> <li>•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 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li> <li>•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받은 경우 :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 추가 감경</li> <li>•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50% 감경</li> </ul>

- 위 법령들이 벌점 경감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유추해보면, 벌점 경감을 통해 법령 취지에 맞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유도하여 산업 내 부정 또는 부실을 예방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벌점 축소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음.
- 즉, 벌점 경감제도는 공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임.
- 건설기술진흥법 또한 1995년 10월 12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을 신설하며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한 바 있음.
  - 1995년 벌점제도 도입 당시 벌점 경감기준을 보면 최신공법(신기술)의 적용, 시공능력평가 결과 우수, 표창 수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경감기준이 존재하였음(〈표 4-21〉 참고)

〈표 4-21〉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경감기준(벌점제도 도입당시, 1995.10.12.)

경감대상	경감기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공법의 적용</li> <li>•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 철저</li> <li>• 최신 공사관리기법 적용</li> <li>•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등 기록 철저(사진등)</li> <li>• 시공능력평가결과 전체업체 평균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li> <li>• 시공능력평가결과 당해업체외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li> <li>•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li> <li>•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ul>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ul>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공법의 적용(당해용역에만 적용)</li> <li>• 설계용역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li> <li>•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li>•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표창(감사장포함)을 받은 경우</li> </ul>

- 그러나 2003년 ‘최신 공사관리기법 적용’ 및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 등 기록 철저’에 대한 경감기준이 제외된 것을 기점으로 2006년에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경감기준 삭제, 2008년에는 ‘표창 수여’에 대한 경감기준 삭제, 2010년에는 벌점 경감기준 전체에 대한 삭제 등 벌점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졌음.
- 이후 10년간 벌점제도는 별도의 경감제도 없이 운영되어오다, 2021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기 동안 ‘무사망사고’, ‘관리우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재도입하였음.
- 아울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무사망사고’ 벌점경감 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적용 확대하며 <표 4-22>와 같은 벌점 경감기준이 현재 운영 중임.

**<표 4-22>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의 경감기준(현재)**

경감기준	경감대상	벌점 경감방법			
무사망 사고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b>무사망사고 연속반기수</b>	<b>2반기</b>	<b>3반기</b>	<b>4반기</b>
		경감률	36%	49%	59%
관리 우수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반기별 점검 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고려하여 점검현장수를 산정한다.			
		<b>관리우수비율</b>	<b>80% 이상 ~ 90% 미만</b>	<b>90% 이상 ~ 95% 미만</b>	<b>95% 이상</b>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가 없거나 관리가 우수한 현장에 대해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아직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은 전무한 실정임.
- 벌점제도가 건설기술인의 안전 및 품질 강화활동을 유도하여 산업 내 부정 또는 부실을

예방하고, 스스로 벌점 축소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교육이수를 통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2021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였으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은 마련되지 않음.
- 반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법률에서는 개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피규제자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유인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의 경우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35시간 당 벌점 7점을 감경해주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의 경우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 벌점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해주고 있음(〈표 4-23〉 참고)

〈표 4-23〉 타법의 벌점제도 경감 기준

법률	경감기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li> <li>→ 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li> </ul>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li> <li>→ 처분벌점 20점 감경</li> <li>•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 준수교육을 마친 경우</li> <li>→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li> <li>•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받은 경우</li> <li>→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 추가 감경</li> </ul>

- 이에 따라 건설공사 벌점제도 또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건설기술인에 한해 부과받은 벌점의 일정부분을 감경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

## 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도입

-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부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벌점 경감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을 유인할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도로교통법의 경우 안전운전을 서약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한 운전자 또는 모범운전자에 한해 제재의 일부를 감경해주는 기준을 도입하고 있음.
  -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운전자가 제도 가입 후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벌점을 감경해주고 있음.

〈표 4-24〉 도로교통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1호 나목
도입시기	• 2013년 8월 1일
개요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혜택	• 1년에 10점, 최대 50점 적립 •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 면허정지 일수(10점에 10일)로 감경
특이사항	• 범칙금, 과태료 미납자 적립 제한 (미납 문제 해결 후에는 적립 가능) •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제한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

-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등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를 감경해주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 또한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서약 후 일정기간 무사고, 무위반을 지킨 건설기술인에 한해 벌점을 감경해줌으로서 부실시공 예방을 일정부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5장 결론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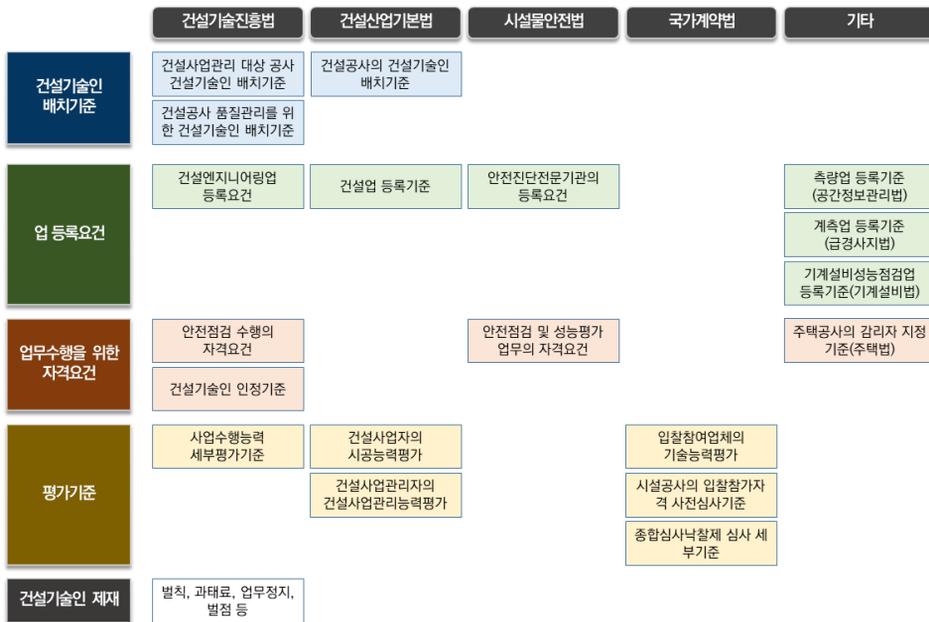


## 제5장 결론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 파악하고, 각 제재의 처분빈도 및 건설산업 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여 불합리하게 제재받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의 중간 결과를 토대로 22년 8월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측에 개선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22년 10월 입법 예고를 통해 개선안 중 일부가 채택되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과업 범위인 건설기술인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아니더라도, 건설 관련 법률에는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인을 배치하거나,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을 등록할 때 특정 기술등급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위 같은 경우 건설기술인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이행 대상자인 사업주가 각종 규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음.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등의 배치 시 일정 등급이상 건설기술인을 확보하도록 규정
  - 업 등록요건 :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등록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 기술인력(건설기술인)을 요함
  -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 건설기술인의 범위, 안전점검 수행의 자격요건,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업무의 책임기준자의 자격 요건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술분야의 역량(기술등급, 자격, 학력) 등을 요구

-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등 ‘사업자’의 입낙찰 및 역량 평가를 위한 요소로 보유/참여 기술인력(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을 활용
- 이에 따라 향후에는 건설산업 내 건설기술인과 연관된 전반적인 ‘규제’를 파악하여 건설기술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 법령별 건설기술인 관련 규제 현황

## 참고문헌

### 〈법령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연구보고서 및 도서〉

- 강운산(2006).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찬식, 안만선, 이도엽, 박희택, 김주원(2019).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현황분석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 박찬식, 안만선, 이도엽, 박희택(2019).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 오치돈, 윤강철, 곽한성, 신원상, 윤종식, 배상희(2022).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개선 연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이태원, 오세욱, 김창원(2021). 공사발주 가이드북, 한국조달연구원
- 정광복, 김영덕(2020).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타〉

- 국토교통부 고시 2019-938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77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 국토교통부(2022), 벌점제도 매뉴얼

# 부록 1 건설 관련 처벌 법규 현황

## 1. 건설기술진흥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아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다리,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진법 제85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진법 제86조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아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다리,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위협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건진법 제85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진법 제86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진법 제87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건진법 제87조의2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건진법 제88조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금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차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 12. 31.>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금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경력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공무원의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건진법 제92조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의2.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의2.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 3) 행정처분

#### 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진법 제24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참고 법조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건진법 제31조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참고 법조문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재(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과징금

## 2. 건설산업기본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95조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건설업의 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수급인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목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법 제98조의2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9조 제1호
건설사업자(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건설사업자(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제3호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3호의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목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9조 제6호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제7호의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법 제81조제3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2호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3호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제14호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5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0조 제1호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제2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 3) 행정처분

#### 가. 시정명령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건설법 제81조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 지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영업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p>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경우하수급인이책임질사유에대하여는수급인에게도같은책임이있는것으로본다.</p>	<p>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p>	<p>건설법 제82조1항</p>
<p>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재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p>		
<p>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p>		
<p>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강요한 경우</p>		
<p>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p>		
<p>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p>	<p>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상당 과징금</p>	<p>건설법 제82조2항</p>
<p>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p>		
<p>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p>		
<p>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p>		
<p>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p>		

다. 건설업의 등록말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의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건산법 제83조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법 제29조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하도급법 제30조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사업자(단체) : 1억원 이하 과태료 임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사업자(단체) : 2억원 이하 과태료 임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원사업자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④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⑤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 4. 주택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	10년 이상의 징역	주택법 제98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99조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주택법 제98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99조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0조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고의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2조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의2. 과실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지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건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4조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무기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권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106조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건축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 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건축법 제106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7조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 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건축법 제106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7조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8조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9조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0조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1조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법 제113조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시설물안전법 제63조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물안전법 제64조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억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안전물 제65조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으로 등록한 자				
9. 제30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 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물안전법 제67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9. 8. 20.>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0. 6. 9.>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행정처분

#### - 영업정지/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시설물안전법 제31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록취소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9.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내 영업정지	
10.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1.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등록취소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엔지니어링산업법 제46조
타인에게자기의상호또는성명을사용하여엔지니어링사업을하게하거나신고증을빌려주는행위를알선하거나타인의신고증을사용한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엔지니어링산업법 제48조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 3) 행정처분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효력상실	법 제24조 시행령제35조제1항
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신고효력상실	
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효력상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사고 외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차:영업정지6개월 2차:신고효력상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하·파손·붕괴되거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등으로 시설물 또는 제작물의 주요 기능·미관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시켰을 때	영업정지 2개월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에 미달한 경우	1차:경고 2차:영업정지1개월 3차:영업정지4개월 4차:신고효력상실	
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말소	
2) 휴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신고말소	
바.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신고효력상실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1)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경우	1차:영업정지3개월 2차:영업정지6개월 3차:신고효력상실	
2)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1차:영업정지6개월 2차:신고효력상실	

## 8. 건축사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법 제39조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법 제39조의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위 행위를 알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사법 제39조의3
위 행위를 알선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징계를받아업무가정지된후에도계속하여그업무를수행한사람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제1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1조제2항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행정처분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자격등록취소	건축사법 제30조의3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등록취소	

## 9. 기술사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사법 제21조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가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술사법 제22조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기술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3) 행정처분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기술사법 제12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법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취소	

## 10. 전기공사업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위험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0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1조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0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1조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0조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1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2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3조
법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법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행정처분

#### 가.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인정 취소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 나. 시정명령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 관리를 맡긴 경우	시정명령	전기공사업법 제27조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다. 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전기공사업법 제28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등록취소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 11. 전력기술관리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이르게한경우 3년이상유기징역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업무상 과실로 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제30조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행정처분

### 가. 인정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취소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3년 이내 인정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 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12. 정보통신공사업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행정처분

### 가.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 나.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인정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 감리원의 업무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

라. 감리원의 인정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인정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마. 시정명령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시정명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5조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제31조제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취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65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취소	

### 13. 소방시설공사업법

#### 1) 행정벌 : 행정형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2)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법 제40조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3) 행정처분

#### 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역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역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소방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

위반행위	처벌종류 및 수위	근거 법조문
가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부록 2 법령별 벌점 측정 기준

###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함.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0.5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나)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지(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2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 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3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 2
5)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0.5
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1 0.5
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2 1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2 1 0.5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9)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교체한 경우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1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조검토 소홀 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3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1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1
2)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2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1

## 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1. 용어의 뜻

-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감경점수"란 수급인이 받은 벌점에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다. "합산 벌점"이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수급인에게 부과된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직전 3년 동안 부여받은 감경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감경점수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에 걸쳐 부여받은 경우라도 1회만 뺄 수 있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번호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3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5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0.5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1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된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2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 3. 감경점수의 부여기준

- 가. 감경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여한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경우: 0.5점
- 나. 부여된 감경점수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 4. 행정처분에 따른 합산 벌점의 소멸기준

-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합산 벌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

####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 점
1.1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2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2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3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1.4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 점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1.5	○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
1.6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 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 점
2.1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3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3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2.4	○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 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
2.5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 한 경우	3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 이 발생한 경우	1

#### 4.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4. 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요 부실내용	벌 점
가.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나.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소방기술자에 한정한다) - 설계수량 산출을 소홀히 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2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다.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라. 기자재선정의 잘못에 따라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마. 용역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용역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참여소방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정한다)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소방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3
- 동일자격 참여소방기술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2

##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요 부실내용	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2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2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3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1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1

주요 부실내용	벌 점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 1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애·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1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2 1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3 3 2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4])

#####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 부과기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 점
1.1	시행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1.2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 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2
	3) 지역여론의 수렴과 경영주체 의견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3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1)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2)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3)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행 상세도면의 목적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1
1.4	설계 수량 및 사업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1)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	3
	2)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3)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공종별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총사업	1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 점
	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1.5	설계의 구조물 및 공종·공법 등의 검토 소홀 1)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전면적인 공종·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50% 이상 공종·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30% 이상 공종·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 1
1.6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 참여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
1.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가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1

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산림사업 단계별로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1) 주요 구조부 및 공종·공법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2) 제거율, 선목(選木), 방제대상목 결정 등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3) 산림기술용역업무 수행 산림기술자등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4) 산림기술자등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3 2 1 1
2.2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1)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 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공정관리의 소홀로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2 1
2.3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2.4	작업계획 및 산림기술자(작업원 포함) 운영의 미흡 1) 작업계획과 다르게 산림사업을 실시한 경우 2)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을 운영한 경우 3) 산림기술자등이 발주청 및 감리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3 2 1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5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자들을 교체한 경우	2
	2) 50% 이상의 산림기술자들을 교체한 경우(퇴직·입대·이민·사망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2.6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행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2.7	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1)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2
	2)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8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1)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행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2.9	산림사업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 불량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2) 임업기계·기구의 설치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3)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2.10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대책마련 소홀	
	1)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2) 사업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2.11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1) 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 각종 사업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경우	
2.12	산림사업 안전관리의 소홀 1)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2
2.13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1)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상자(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3)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5 3 1

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3.2	시행 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중·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1
3.3	시행관련 제출 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1) 제출 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3.4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5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1) 검사 후 재시행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검사 후 부분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6	산림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1) 산림기술자들의 자격 미달 및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을 운영한 경우 2) 산림기술자들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 1
3.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들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들이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참여한 산림기술자들의 업무 범위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2
3.8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들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50% 이상 변경한 경우(퇴직·입대·이민·사망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3.9	산림기술자들의 현장시행실태 점검의 소홀	
	1)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명령·지시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점검 횟수에 미달한 경우	2 1
3.10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11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1)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0일 이상 지연하거나 안전점검을 사업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2
3.12	감리를 수행하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1)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2)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상자(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3)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

### 3. 벌점의 부과 절차

- 가. 벌점 부과기관은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벌점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벌점 부과기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벌점 부과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이 검토하여야 한다.
- 다. 벌점 부과기관은 나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내용 확인과 벌점의 부과과정에서 착오 및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정정한 후 나목에 따라 다시 부과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도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벌점 부과 사유별로 해당 부분을 분담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 4.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 가.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모두 소멸된다.
- 나.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한다.

## 5. 별점의 적용

가. 누계 평균별점은 다음 표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점으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별점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별점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누계 평균별점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별점을 합산하여 누계 평균별점을 산정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점은 승계된다.

라. 제2호나목 2.13 및 같은 호 다목 3.12에 기재된 별점은 사망자·중상자·경상자 각 1명당 적용되는 별점이며, 그 1명당 적용되는 별점에 사망자·중상자·경상자의 수를 각각 곱하여 최종적인 별점을 산정한다.

## 6. 별점의 공개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별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을 공개한다.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 1. 용어의 뜻

- 가. "별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별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별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별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법 제3조의5에 따른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 사. "연동계약"이란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 3) 시정권고: 1.0점
-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 5) 시정명령: 2.0점
-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 벌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최우수: 2점
  - 나) 우수: 1점
-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 가) 최우수: 3점
  - 나) 우수: 2점
  - 다) 양호: 1점
-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별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별점 중 25% 초과 50% 이하
  -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9)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수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 1. 용어의 정의

- 가. "벌점"이란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의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를 말한다.
- 다. "누산점수"란 벌점을 부과하려는 범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2. 벌점의 부과기준

- 가. 벌점은 1)의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2)의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하되, 2)의 라)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3항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위반유형	법 위반행위
마)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
바)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 2)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시정조치 유형	벌점
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다) 법 제27조제2항 본문·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라) 법 제27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나.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라. 제3호가목4)에 따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벌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 2) 제5조의3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 4)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 가) 기본점수
      - (1)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 나) 추가점수
      -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인상반영률} = \frac{\text{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text{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times 100$$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left( \text{품목별 인상반영률} \times \frac{\text{품목별 납품물량}}{\text{조정을 신청한 전체 품목의 납품물량}} \right) \text{의 합계}$$

나. 가목에 따른 별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